

노사협력회의 운영규정

2019. 9. 27

서울교통공사

노사협력회의 운영규정

제정 2019. 9. 2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협력회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이하 “조합”)과 상호협력과 소통활성화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경영의 민주화와 산업평화에 이바지하며 건전한 기업발전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무】

공사와 조합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 2 장 중앙 노사협력회의

제4조 【구성】

- ① 협력회의는 공사와 조합을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10인 이내로 한다.
- ② 공사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측위원”이라 한다)은 공사 사장과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노측위원”이라 한다)은 조합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의장 등】

- ① 협력회의에 의장을 두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사측위원과 노측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협력회의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제6조 【위원의 신분】

- ① 협력회의의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 ② 협력회의의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③ 협력회의의 위원의 회의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 3 장 협력회의 운영

제7조 【회의】

- ① 협력회의는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협력회의는 필요시 노사 각 8인 이내로 구성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소집】

- ① 의장은 협력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문서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의 공개】

협력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협력회의의 위원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11조 【회의록 비치】

① 협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협의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 4 장 협력회의의 임무

제12조 【협의사항】

협력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개선
9.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 기타 조합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기타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제13조 【보고 설명사항】

① 공사는 년도별 첫 정기회의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가.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 나. 경영실적과 전망
 - 다. 기구개편
 -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폐업

2. 분기별 사업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실적
- 나.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 다. 신제품 개발 및 기술, 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인사방침
- 나. 증원 또는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 다. 모집 및 훈련

4. 공사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 다. 부채현황과 상환
- 라. 경영수지 현황

5. 기타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협력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요구한 사항
- 나. 노측위원이 보고를 요구한 사항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측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본부별 노사협력회의

제14조 【본부별 노사협력회의】

- ① 고객서비스본부, 차량본부, 승무본부, 기술본부에 각각 본부별 노사협력회의 (이하 “본부 노사협력회의”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② 본부 노사협력회의는 제4조 내지 제12조(구성, 의장 등, 위원의 신분, 회의 회의소집, 회의의 공개, 비밀유지, 회의록비치, 협의사항)를 준용하되, 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4조(구성)를 준용함에는 “공사 사장과 사장이 위촉하는 자”는 “해당 본부장과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조합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조합 해당 본부장 및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본다.
- ④ 각 본부 노사협력회의 보고사항은 중앙 노사협력회의 보고로 같음한다.

제15조 【운영】

- ① 본부 노사협력회의에서 해소되지 않은 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중앙 노사협력회의에 부의한다.
- ② 본부 노사협력회의는 회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 노사협력 회의에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지부 노사협력회의

제16조 【지부 노사협력회의】

- ① 각 지부별 해당 소속에 지부 노사협력회의(이하 “지부 협력회의”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② 지부 협력회의는 제4조 내지 제12조(구성, 의장 등, 위원의 신분, 회의, 회의 소집, 회의의 공개, 비밀유지, 회의록비치, 협의사항)를 준용하되, 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4조(구성)를 준용함에는 “공사 사장과 사장이 위촉하는 자”는 “해당 현업의 장과 현업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조합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조합 해당 지부장 및 지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본다.
- ④ 각 지부 협력회의 보고사항은 중앙 노사협력회의 보고로 같음한다.

제17조 【운영】

- ① 지부 협력회의에서 해소되지 않은 사항은 본부 노사협력회의에 부의한다.
- ② 지부 협력회의는 회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 및 본부별 협력 회의에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고충사항의 처리

제18조 【고충해소위원회】

-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해소위원회를 중앙과 본부단위로 설치·운영한다.
- ② 현업의 장과 지부장을 고충해소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은 근로자의 고충 발견 및 그 처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단, 자체에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충해소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고충해소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중앙 고충해소위원회는 중앙 노사 각 3인으로 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고객센터, 차량, 승무, 기술본부 고충해소위원회는 중앙 고충해소위원회와 연계하여 개최하며 각 본부별 자체 고충사항을 우선 해소한다.
- ③ 본부별 고충해소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노사 각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고충해소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접수
 2. 고충내용에 따라 해소방안 강구 및 결과 통보
 3. 처리 곤란한 중요한 사항은 노사협력회의에 부의

제19조 【고충해소의 절차】

- ① 근로자는 전산시스템으로 고충을 접수한다.
- ② 본부 노사협력회의와 지부 협력회의를 통해 근로자의 고충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② 고충해소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본부별 고충해소 위원에게 건의하고 본부별 고충해소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에 건의하여 처리한다.

제20조 【고충해소위원 신분보장】

- ① 고충해소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고충해소위원은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고충해소절차의 활용】

직원은 고충해소를 위하여 사내외의 진정을 지양하고 고충해소 절차에 따라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훈 (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위원장 김철관